

의안번호	2212097
의 퇴 인	조은희의원
회 답 일	2025. 11. 17.
추 계 번호	25B43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0(딥보이스등 방지 및 이용자보호)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등(이하 “딥보이스등”이라 한다)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딥보이스등의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신번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발신번호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발신번호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의20(딥보이스등 방지 및 이용자보호)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	

2. 상세 사유

□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2조의20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등(이하 “딥보이스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딥보이스등의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딥보이스등을 탐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탐지 방법, 이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은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의 딥보이스 탐지기술은 제한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시작 단계로, AI기술을 활용해 상대방을 기만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보이스등을 포함한 신종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표 1]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5	2026(안)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디지털범죄정보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과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을 개발	4,500	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4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신번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발신번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확인·검증 방법, 이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교환기 교체, 발신번호 서명 처리·검증 서버 및 번호검증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는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번호 변작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2] 번호변작 신고센터 구축·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5	2026(안)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번호변작 신고센터 구축·운영)	전화번호 변작 등에 의한 사기 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용자의 피해확산 방지	635	63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